

예산총칙

2023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459,890,198 | 43,796,706 |
| 일반회계 | 1,291,332,289 | 38,739,969 |
| 특별회계 | 168,557,909 | 5,056,737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12,415,273 | 3,372,458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49,636,371 | 1,489,091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55,855,902 | 1,675,677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6,923,000 | 207,690 |
| 기타특별회계 | 56,142,636 | 1,684,279 |
|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| 1,850 | 56 |
|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21,966,897 | 659,007 |
|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3,370,350 | 101,111 |
|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| 19,415,190 | 582,456 |
|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| 11,388,349 | 341,650 |

제 2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23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4 조 202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019,84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2023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3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.